# 12 · 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85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김은혜·강대식·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장겸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유영하·유용원 윤상현·윤영석·윤재옥 윤한홍·이달희·이만희 이상휘·이성권·이종수 이인선·이종배·이종욱 이철규·이현승·인요한 임이자·임종득·장동혁 정동만·정성국·정연욱 정점식·정희용·조경태 조배숙·조승환·조은희 조정훈·조지연·최보윤 최수진·최은석·최형두 추경호·한기호·한지아 의원(108인)

#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여객기 탑승자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항공사고(이하 "12·29여객기사고"라 한다)가 발생함.

12·29여객기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 등이 신체적·정 신적·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
- 나.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12·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 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 다. 국가등은 12·29여객기사고 당시 피해자 등 중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라. 국가등은 12·29여객기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조).
- 마.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국

무총리와 민간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법률 제 호

# 12 · 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 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생활 및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12·29여객기사고"란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 탈하는 사고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2. "희생자"란 12·29여객기사고 당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에 탑 승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2·29여객기사고 당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 계존비속·형제자매
-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 "피해지역"이란 12·29여객기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 5. "2차 가해"란 신문·잡지·방송·출판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으로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행위를 말한다.
- 제3조(2차 가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12·29여 객기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 구축, 인력 확충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29여객기사고에 관련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 제6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 다.
- 제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12·29여객기사고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생활지원금등) ① 국가는 희생자 및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29여객기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 3. 기타지원금: 15세 미만인 희생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 21조에 따른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및 12·29여객기사고 당시 피해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 (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가 12·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29여객기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 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교육비 지원 등) 국가등은 12·29여객기사고 당시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 계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등에 대한 특례)
  -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12·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국가등은 12·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 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 민의 특성
  -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 4.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8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

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제25조에 따른 사단 또는 재단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9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 강관리를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추모사업 등

제20조(추모사업 등 시행 등) 국가등은 12·29여객기사고 희생자들의 추모와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등 피해자 및 침체된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 2.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 3. 제25조에 따른 사단 또는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원·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 ④ 지원·추모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 ⑥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피해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2. 항공, 심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⑦ 지원·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추모사업 등의 명칭) 지원·추모위원회는 추모시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5조에따른 사단 또는 재단과 협의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제23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침체된 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사단 또는 재단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2·29여객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사단 또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1. 추모시설의 운영 · 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 2. 항공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항공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 4. 그 밖에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사단 또는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본다.
  - ③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사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에 따른 사단 또는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침체된 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 보체계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 제4장 보칙

제28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30조(지원금 등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5장 벌칙

- 제3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32조(미수범) 제31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지원·추모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 설립 등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12·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 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치료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규정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피해자가 12·29여객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에도 적용한다.
- 제5조(치유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별 휴업·휴직을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휴직기간에 포함한다.
- 제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